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71호

거여 제2구역 관리처분계획(환지예정지) 변경인가 및 환지확정처분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 건설부 고시 제140호('76.8.26.)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12호('76.9.4.)로 사업시행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8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10호('84.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147호('85.3.6.)로 3차에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환지예정지)되었고 송파구공고 제1302호(2017.9.29.)로 공사완료공고된 거여 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확정측량 등의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②항 및 제43조 제②항, 「도시개발법」 제29조 및 도시개발법 제3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의거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도시개발법」 제40조 제①항, 동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환지확정처분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거 이전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거여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2.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181, 202, 220번지 일대

나. 면 적 : 71,667.5㎡

3.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송파구청장

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4. 사업기간 : 1976. 9. 4 ~ 2017. 12. 24.

5. 관리처분계획(환지에정지)변경사항 : 도면생략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항
면적(㎡)	72,366.8	71,667.5	· 도로면적의 변경발생 (확정측량반영)

6. 토지현황

(단위 : ㎡)

구분	계	일반지	분양지	유보지	체비지	도로	기타	비고
면적	71,667.5	36,875.7	13,655.3	258.4	340.3	20,268.4	269.4	

7. 환지처분일 : 2017. 12. 14.**8. 사업비 정산내역**

가. 교부 청산금 : 248,745,130 원

나. 징수 청산금 : 19,414,736,400 원

9.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 : 1, 415, 404, 500 원

나. 보조금 : 내역 생략

다. 사업비 재원별 내역 : 내역생략

10.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를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에 비치
(02-2147-2903 / 선택원)